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6. 6. 15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운 영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년 6월 14일 · 김성배 의원 외 4인
- 나. 회부일자 : 2006년 6월 14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62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2차 운영위원회(2006. 6. 15) 상정·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김 성 배 의원)

가.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(법률 제7935호, 2006.4.28 공포)되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(2005.12.29 공포)되어 우리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(17인→11인, 6인 감소)하는 등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법 개정으로 조례명을 “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”에서

“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”로 한글 맞춤법에 따라 변경함

- 각 상임위원회 정수 “8인”을 각각 “5인”으로 조정(안 제2조)
- “징계자격특별위원회”를 “윤리특별위원회”로 조정(안 제3조·제7조)
- 특별위원회 정수 “8명”을 “5인”으로 조정(안 제8조제2항)

다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, 동 법 제50조의2, 동 법 제54조
-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: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(보고자 : 전문위원 라 도 군)

4. 요지 및 답변 요지 : 없 음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